

●산림청고시 제2022-115호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변경지정(공익용→임업용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1일

산림청장

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가. 공익용산지 → 임업용산지

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엽의 번호	구역의 표시
대전광역시	유성구	대전044	NJ52-13-20-044	임업용산지
대전광역시	유성구	대전045	NJ52-13-20-045	임업용산지
경기도	이천시	이천075	NJ52-9-20-075	임업용산지
경기도	이천시	이천085	NJ52-9-20-085	임업용산지
경기도	이천시	안성040	NJ52-9-27-040	임업용산지
충청북도	청주시 청원구	미원024	NJ52-13-14-024	임업용산지
충청북도	영동군	영동031	NJ52-14-22-031	임업용산지
충청남도	서산시	서산088	NJ52-13-2-088	임업용산지
충청남도	서산시	홍성043	NJ52-13-10-043	임업용산지
충청남도	금산군	금산070	NJ52-13-27-070	임업용산지
전라남도	보성군	북내094	NI52-6-1-094	임업용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음 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·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